

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김경 의원 외 14명

나. 의안번호 : 제100호

다. 제출일자 : 2022. 8. 26.

라. 회부일자 : 2022. 9. 2.

2. 제안사유

- 시장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하여 사고의 위험이 크
다로 인정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
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하
도록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신
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시장이

노력하도록 규정함(안 제7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2. 9. 7. ~ 2022. 9. 11.

○ 제출의견 : 없음

라. 관련부서 의견조치 결과¹⁾

○ 제출의견 : 원안 가결

- 제2항 신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노력을 강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보다 적극 설치하게 됨으로써
-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통학로 안전확보를 보다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1) 보행자전거과-903호(2022.9.7.)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대해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의견

-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녹색횡단 신호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²⁾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³⁾에서는 “특별·광역시장은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한 보행을 위해 ‘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’를 설치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

2) 보행신호에 따른 음향신호 표출내용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, 경찰청, '17.3.)

보행신호	상 황	음향신호
① 적색	무단횡단 감지 시	「위험하오니 인도로 이동해 주십시오」
② 녹색	횡단 감지 시	「좌우를 살핀 후 건너가십시오」
③ 녹색 점멸	횡단 감지시	「다음 신호에 건너세요」

3)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 비고

바. 보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
- 2).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

-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 설치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조례 제7조의3⁴⁾이 '19년 1월 3일 개정⁵⁾되었고

조례 개정 당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,730개소 중 32개⁶⁾의 횡단보도에만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가 설치되어 있으며, 현재는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1,711개소 중 667개⁷⁾의 횡단보도에 설치되었으나 아직도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가 다수인 상황임

- 또한,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⁸⁾을 살펴보면 2021년 사고건수는 68건으로 매년 등락

- 4)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3(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및 재정지원)
- 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 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5) 서울특별시조례 제6976호, 2019. 1. 3., 일부개정·시행
- 6)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(의안번호 143호, '18.9.19. 발의) : 어린이보호구역내 32개 지점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
- 7) 서울시 보행자전거과는 1,71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중 667개 지점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('22년 9월)
- 8) 최근 5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(12세 이하) 교통사고 현황

연도	보호 구역 (개소)	사고 건수 (건)	사망자 수 (명)	부상자 수 (명)	사고유형(건수)				
					횡단중	차도 통행중	길가장 자리 구역	보도 통행중	기타
2017	1,733	81	1	85	45	3	1	1	31
2018	1,730	77	1	77	43	7	2	4	21
2019	1,721	114	2	115	53	8	2	2	49
2020	1,694	65	-	70	19	1	2	1	42
2021	1,735	68	1	83	26	5	-	2	35

※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(<http://taas.koroad.or.kr/>)

을 거쳐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횡단중 사고 비율은 38.2%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에 따라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 설치 등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횡단 중 사고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시설투자가 필요한 상황임

- 동 개정조례안은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 구역내 횡단보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“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”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의 노력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

다만,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“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”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합리적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